| 산업통상자원부<br>http://www.motie.go.kr | **보 도 자 료** | 정책브리핑 |
|---|---|---|

**2017년 9월 15일(금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배포즉시 보도가능)

| 배포일시 | 2017. 9. 14.(목) 12:00 | 담당부서 | 산업피해조사과, 덤핑조사과<br>불공정무역조사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채규남 과장(044-203-5860)<br>고재강 과장(044-203-5870)<br>정병락 과장(044-203-5880) | 담 당 자 | 조희정 사무관(044-203-5862)<br>박종희 사무관(044-203-5873)<br>김종윤 사무관(044-203-5882) |

# 무역위원회, 베트남 · 우크라이나 ·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5년간 4.06~19.06%의 덤핑방지관세 최종판정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 신희택)는 '17. 9. 14.(목) 제369차 회의를 열고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* 부과 중인 베트남, 우크라이나,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앞으로 5년간 4.06~19.06%**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.

* 베트남, 우크라이나,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서는 '17.5.31일부터 6.08~32.21%의 잠정관세가 부과중임(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-13호)

** (베트남) 엔알엠 및 그 밖의 공급자 4.06%, (우크라이나) 니코폴 및 그 밖의 공급자 19.06%, (인도) 안자니 및 마이탄 11.04%, 인드실 에너지 및 인드실 하이드로 7.48%, 몰텍스 19.06%, 그 밖의 공급자 11.04%

○ 페로실리코망간(Ferro-Silico-Manganese)은 철(Fe), 망간(Mn), 규소(Si)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로 철강 제품의 재질을 좋게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부원료이며, 국내시장규모는 약 2,500억원(약 23만톤)이고 베트남 · 우크라이나 · 인도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% 수준이다.

□ 이 건은 베트남, 우크라이나, 인도산 제품의 저가 수입이 급증하여 경영환경이 악화되었다며 '16.11.18일 동부메탈 등 4개사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지난 9개월간 서면조사, 공청회, 국내외 실사 등이 진행했다.

○ 무역위원회가 세계무역기구(WTO)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한 결과, 국내산업은 철강산업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물량이 감소했으며, 손익이 악화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했다.

○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('16.12.7.)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

○ 이번 최종판정은 국내 합금철 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관련 기업의 고용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이와 함께, 무역위원회는 케이엠씨 엑심 코퍼레이션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인조네일*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국내 2개 업체를 상대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, 국내업체 2개사에 대해 해당물품의 수입·판매 중지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조치를 결정하였다.

* 인조네일 : 하단에 부착된 양면테이프의 이형지만 제거하고 바로 손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원터치 장착식 제품

○ 무역위원회는 '17.3.23.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6개월간의 서면조사, 현지조사,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.

【참고】 1.베트남, 우크라이나,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반덤핑조사 개요
2.인조네일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조희정 사무관(☎044-203-5862), 덤핑조사과 박종희 사무관(☎ 044-203-5873), 불공정무역조사과 김종윤 사무관(☎044-203-58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# 참고 1 베트남,우크라이나,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반덤핑조사 개요

### □ 조사 개요

○ 신청인(신청일) : 동부메탈, 심팩메탈, 심팩메탈로이, 태경산업 ('16.11.18.)

○ 피신청인 : 엔알엠(베트남), 니코폴(우크라이나), 안자니・마이탄・인드실에너지・인드실하이드로・몰텍스(인도)

○ 조사신청물품

- 품명 : 페로실리코망간(Ferro-Silico-Manganese)

  * 원재료 광석인 망간광석, 규석 등과 환원재인 코크스 등을 배합하여 고온으로 용융하고, 이를 배출하여 응고시킨 후 파쇄하여 생산되는 철과 망간, 규소 등이 합금된 합금철

- 용도 : 철강 생산과정에서 불순물을 걸러내고, 철을 더욱 단단하게 하거나 진동, 소음 등을 줄이는 부원료로 사용

- HSK 분류 : 7202.30.0000

### □ 국내시장 현황 ('15년 기준)

○ 국내생산자 : 동부메탈 등 5개사

○ 국내시장규모 : 약 2,500억원 / 약 23만톤

* 시장점유율(물량) : 국내산 60% 내외, 인도, 우크라이나, 베트남산 40% 내외

### □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

| 공급국 | 공급자 | 덤핑방지 관세율 |
|---|---|---|
| 베트남 | Hai Duong New Resources Metallurgy Shareholdings Company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| 4.06% |
| | 그 밖의 공급자 | 4.06% |
| 우크라이나 | PJSC Nikopol Ferroalloy Plant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| 19.06% |
| | 그 밖의 공급자 | 19.06% |
| 인도 |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<br>- Anjaney Ferro Alloys Limited<br>- Maithan Alloys Limited | 11.04% |
| |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<br>- Indsil Energy and Electrochemicals Private Limited<br>- Indsil Hydro Power and Manganese Limited | 7.48% |
| | Mortex Group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| 19.06% |
| | 그 밖의 공급자 | 11.04% |

### □ 그 동안의 조사경과

○ 조사신청서접수('16.11.18.), 조사개시 공고('16.12.7.)

○ 예비판정('17.4.21.), 국내외 현지실사('17.5~7월), 공청회('17.6.16.)

## 참고 2 인조네일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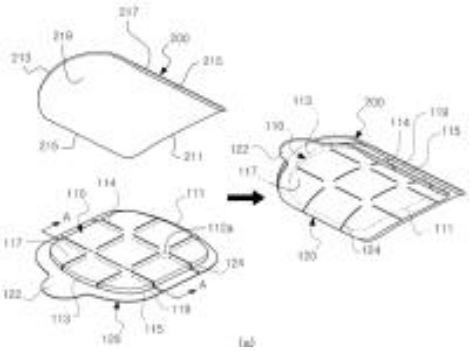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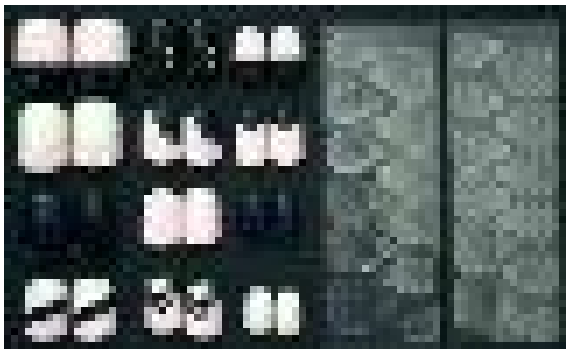
### □ 조사개요

○ 신청인: 케이엠씨 엑심 코퍼레이션

○ 피신청인: L사(수입업체), D사(국내 판매업체)

○ 조사대상기간: ’14. 1. 1. ~ ’17. 3. 22.

○ 조사대상물품: 인조네일(HS코드: 3926.90.9000, 3919.90.0000)

| 신청인 특허발명 | 조사대상물품 |
|---|---|
|  |  |

* (특허발명) 인조네일에 부착된 양면테이프의 이형지를 제거하여 손톱에 부착하는 인조네일로, 주름 방지용 커팅라인을 양면테이프에 형성시켜 점착력을 향상시킴

### □ 조사경과

○ 조사신청서 접수(‘17.3.3), 조사개시결정(’17.3.23)

○ 당사자회의(‘17.6.14), 현지조사(’17.6-7월), 전문가 자문(‘17.8월)

### □ 조사결과

○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인조네일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판매한바, 이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함

> "**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**"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,
> -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특허권 침해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

○ 이는 법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(시정조치 명령, 과징금 부과) 대상임